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징계요구 · 통보 · 기관경고

제 목 뉴서울CC회원 우승 찬조금(금품) 수수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문화진흥(주)  
조 치 기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관 련 자 한국문화진흥(주) ◆◆◆◆ ☆☆☆, ▽▽▽▽팀장 ▼▼▼  
내 용

### 1. 사건개요

위 ☆☆☆은 2019. 2. 27.부로 한국문화진흥(주)의 ◆◆◆◆로 부임하여 한국문화진흥(주)와 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뉴서울CC)의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은 2018. 1. 1.부터 2019. 7. 1.까지 ★★★★★팀장 직위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한국문화진흥(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뉴서울CC를 위탁·운영하면서 매해 10월 경 뉴서울CC의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럽챔피언 및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 4.부터 10. 6.까지 3일간 ‘뉴서울CC 클럽챔피언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 ☆☆☆은 2019. 4. 6. 뉴서울CC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2018년도 뉴서울CC 클럽 챔피언 대회 우승자 2명으로부터 ‘우승 찬조금’ 명목으로 총 1,500만원(현금 5만원권)을 수수하고 ★★★★★팀장 ▼▼▼에게 전달하였으며, ▼▼▼은 ‘찬조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 0000-0000-0000-0000)에 입금 한 뒤 한국문화진흥(주)의 각 부서 및 캐디 회식비, 노조 행사비, 컨트리클럽 행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 ◆◆◆◆ 및 그 임직원 모두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된다.

이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한국문화진흥(주) 『행동강령』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 ◆◆◆◆ 및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8년도 뉴서울CC의 클럽챔피언 대회 일반부 우승자 ◇◇◇와 시니어부 우승자 ▲▲▲ 두 명은 2019. 4. 6. 뉴서울CC를 방문하여 ◆◆◆ ☆☆☆에게 2018년 클럽챔피언 대회 우승자로서 이전의 관행에 따라 ‘우승 찬조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서울CC에서 개최되는 클럽챔피언 대회 우승자들은 통상적으로 우승을 자축하고, 대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하여 뉴서울CC 직원 격려의 차원에서 뉴서울CC에 찬조금이나 기념품 등을 매년 관행적으로 전달하였으며, 2018년도 클럽챔피언 대회 우승자 두 명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우승 찬조금으로 내겠다고 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총 1,500만원의 현금을 가져와 뉴서울CC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전달하였다.

그런데 한국문화진흥(주)는 공공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은 ‘우승 찬조금’을 제공하겠다는 ◇◇◇와 ▲▲▲ 두 회원의 의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당시 ★★★★★팀장이었던 ▼▼▼을 불러 두 사람이 가져온 우승 찬조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 ☆☆☆과 ▼▼▼은 수령한 찬조금을 두 회원의 의사에 따라 직원 회식비로 집행하거나 그 외 기관 행사비 등 기관운영 비용으로도 사용하기로 하였고, 우승 찬조금의 관리는 ▼▼▼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령된 찬조금의 관리·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게 처리되었는데 ▼▼▼은 찬조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찬조금의 집행 또한 ▼▼▼이 직접 집행하거나 각 팀의 팀장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사용하게끔 하였다.

본 사건 관련자 두 명이 찬조금을 받은 지난 4월부터 감사일 현재(2019. 12. 3.)까지 사용된 찬조금은 [표1]과 같으며 한국문화진흥(주)의 각 부서 및 캐디 회식비, 노조 행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총 1,500만원 중 1,324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우승 찬조금’ 사용 내역

사용일자	사용금액(원)	사용내역
2019.4.14	2,750,000	○ ♀♀♀♀팀 회식비
2019.4.17	4,550,000	○ 캐디 회식비
2019.4.17	450,000	○ ♂♂♂♂팀 회식비
2019.4.19	1,650,000	○ ♥♥♥♥팀 회식비
2019.4.24	1,600,000	○ ★★★★★팀 회식비
2019.4.26	800,000	○ ▼▼▼▼팀 회식비
2019.4.30	400,000	○ 노동조합 행사비
2019.5.10	240,000	○ ♥♥♥♥ 컨트리클럽 회원교류 협약식 행사 캐디피
2019.7.4	260,000	○ 전임 ◆◆◆◆ 초청 행사 캐디피
2019.7.4	60,000	○ 전임 ◆◆◆◆ 초청 행사 관련 대리운전 비용
2019.7.22	480,000	○ 2019년 경영실적 개선 관리자 워크샵 관련 라운딩 캐디피
총계	13,240,000	

## [관련자들의 주장]

☆☆☆과 ▼▼▼은 ‘우승 찬조금’ 제공에 대해 통상적으로 클럽챔피언 대회 우승자들의 오랜 관행적인 협찬이며, 뉴서울CC처럼 회원제 골프장 또는 민간 골프장에서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클럽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우승자가 찬조금 또는 협찬금을 해당 골프장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 주장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회원이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뉴서울CC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골프 대회 진행 등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찬조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두 회원은 금품제공 대가로 어떠한 특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들 또한 두 회원에게 부적절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 [사건에 대한 판단]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 등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관행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금품·향응등 수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본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청탁금지해석과-1978, 2019.12.12.)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하며,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문화진흥(주) 임직원인 ☆☆☆과 ▼▼▼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으로 법령을 준수해야하는 의무주체이나 본 사안의 경우 ① 우승자들의 찬조금은 매년 실시되는 클럽챔피언 대회의 관행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② 찬조금의 사용처가 실제 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비 또는 행사비 등 기관운영 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 ③ 찬조금 제공자가 별도의 특혜 등 대가로 요구하지 않았고 ④ 두 회원의 골프장 예약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한 특혜 제공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즉,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 회원이 뉴서울CC의 오랜 관행에 따라 우승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기탁하고자 한 것이므로 ☆☆☆과 ▼▼▼이 지원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등 금품등의 수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편 두 회원이 전달한 찬조금의 성격과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금품은 「기부금품법」에 명시하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인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으며, 두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할지라도 한국문화진흥(주)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찬조금을 수령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은 회원의 기부금품 수수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한국문화진흥(주) ◆◆◆◆로서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의 경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우승 찬조금을 수수

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문책이 요구된다.

## 징계요구 양정

본 사건 관련자들의 ‘우승 찬조금’ 수수 행위는 그 경위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금지행위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前)★★★★팀장 ▼▼▼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원들이 기탁하는 금품을 수령하여 기관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행위와, 수령한 ‘찬조금’을 본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과 한국문화진흥(주)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6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 지침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한국문화진흥(주) ◆◆◆◆ ☆☆☆은 2019년 2월경 임명되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타공공기관 ◆◆◆◆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한국문화진흥(주) ◆◆◆◆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 ☆☆☆에게 ‘주의(엄중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통보]

###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 ②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수수하고, 찬조금의 집행·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前)★★★★팀장 ▼▼▼에게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39조 및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조치하시고, [징계]
- ③ 찬조금 중 미집행액은 관련자에게 전액 반납하시고,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찬조금 등 기부금품을 부적절하게 접수·수수하여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주)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근로의욕과 노사 공동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예산을 말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하여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예산의 성격과 목적성에 맞게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인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한국문화진흥(주)의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편성 시 예비비 항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문화진흥(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 예비비 편성 현황

연도	구분	편성목적	편성내역(백만원)	집행내역(백만원)
2018년	예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104	100
2019년	예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92	92

한국문화진흥(주)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의 2%를 출연액으로 정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의 성격 상 예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나 한국문화진흥(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을 매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개 선, 통 보

제 목 회계업무 처리 체계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금전 관리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현금시재액을 확인하고, 월 주기로 은행예금의 잔액과 예금 원장의 기록을 대조하여 예금시재액이 일치하는 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 「회계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출납담당자는 매월 말 현재 은행의 잔고증명과 예금원장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주) 「회계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계약담당 등을 둘 수 있으며, 정원과소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국문화진흥(주)의 시재액 조회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금시재액 확인 업무의

경우 출납담당자 1인이 매월 초 통장정리를 한 후 전월 말 기준 통장 잔액과 내부 회계 프로그램의 회계원장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예금시재액의 확인 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지는 않고 있으며, 담당자가 시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금전 사고를 예방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정의 양식을 갖춘 문서를 통하여 예금시재액 확인 결과를 회계업무 책임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등의 회계업무는 회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자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국문화진흥(주)는 정원의 과소로 수입과 지출 업무를 동일인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진흥(주)는 2016년 실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 종합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수입금 관리와 출납업무를 분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정원의 한계로 인하여 겸직은 유지하되 출납담당자의 수입·지출 처리결과를 회계담당자가 2차로 확인·점검하는 구조를 갖추고, 출납담당자의 신원보증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 및 회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의 직무는 담당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 ① 예금시재액 확인 업무 수행 시 출납담당자가 회계업무 책임자에게 문서를 갖추어 결

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양식과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개선]

- ② 자금의 수입과 지출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부서주의

제 목	인장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인장으로 직인과 사용인감을 보유하고 있다. 직인은 대외적인 공문서 발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인감의 경우 증명서, 계좌이체 및 자금인출 등 기타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은 문서처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사인의 종류와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5조에서는 사인관리책임자는 사인을 날인하였을 경우 사인날인대장에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금관리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복수의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용인감 또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사용인감의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담당부서인 ★★★★★팀은 사용인

감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팀 부장 1인이 2개의 법인사용인감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내부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2개의 법인사용인감을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보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부서주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 ★★★★★팀은 한국문화진흥(주) 및 뉴서울컨트리클럽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식자재를 구매할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는 회계규정 제52조제2호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입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마감 제출일의 전일로부터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추정 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sup>1)</sup>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2018년의 경우 물품 및 용역 2억1천만원, 공사 80억원, 2019년의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 78억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들의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인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한국문화진흥(주) 계약 업무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2]과 같이 총 4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공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18~2019년도 한국문화진흥(주) 최소 공고기간 미달 계약 내역

계약명	입찰공고일	입찰마감일	공고기간	미달 공고일수
2018년 3/4분기 식재료 구매	2018.6.12	2018.6.22	11	1
문화OUT코스 (1-9홀)스프링클러자동화 설비공사	2019.3.24	2019.4.3	11	1
2019년 3/4분기 식재료 구매	2019.6.11	2019.6.21	11	1
2019년 4/4분기 식재료 구매	2019.9.10	2019.9.20	11	1

상기 4건의 계약내역은 그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최소 10일 전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팀에서 실제 공고한 기간을 산정해본 결과 1일씩 공고기간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시 정, 부서주의

제 목 외부 위탁운영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늘집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고객편의와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업체인 (주)□□□□□과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 뿐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진흥(주) 「회계규정」 제73조에서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

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주)□□□□□□과 체결한 중간그늘집 위탁운영 계약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나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및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였으나,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 ① 향후 중간그늘집 위탁운영계약 추진 시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명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거나 견적서 징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시 정, 주 의

제 목	위탁관리재산 재물조사 및 관리소홀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뉴서울골프장 등의 재산관리 위탁약정에 따라 뉴서울골프장 시설 내의 토지, 건물, 수목, 잔디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위원회 소유재산 일체의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재산과 재물의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총괄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진흥(주)는 2016년 종합감사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재물번호 부여 및 재물조사필증 부착 소홀에 따라 재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요구받았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는 「물품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물품조달 수량 및 시기 등의 조정, 통제, 수불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총괄관리자를 정하도록 하고, 총괄관리자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물품에 분류번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중 한국문화진흥(주)의 재물조사 실시현황 및 재물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재물관리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와 같이 물품 분류번호 부여 및 재물조사필증 부착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3] 한국문화진흥(주) 물품 분류번호 미부여 내역

소유구분	계정구분	재물내역	수량	금액(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건물	남·북스타트하우스, 코스관리동 신축공사	3	2,038,312,224원
	건축물	클럽하우스 앞 자가주차장, 북코스 광역피뢰침 등	10	1,019,980,579원
	기계장치	수중모터펌프, 승용식 3갱 그린모아, 5인승 전동카트 중앙제어반 등	27	1,192,269,800원
	차량운반구	아반떼, 스타렉스, 시약차량 등	11	432,953,664원
	비품	락카실 락카함, 락카실 장의자, 연회실 식기 세척기 및 식탁 등	204	961,646,889원
합계			255	5,645,163,156원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 ① 재물조사를 소홀히 한 (前)★★★★팀 팀장 ♣♣♣과 (前)■■■파트장 ○○○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주의]
- ② 빠른 시일 내에 관리물품에 대한 재물번호 부여 및 재물조사필증 부착 등 재물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대우요금 적용 기준 미흡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은 뉴서울CC를 운영하며 회원과 비회원의 내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원천으로 기금을 창출하고 있다. 입장료 수입은 내장객의 숫자(수량요소)와 각 내장객의 분류에 따른 입장요금(가격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장객 수를 극대화 하고 입장요금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금을 극대화하고 영업매출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리 요소에 해당한다.

입장요금은 회원 종류(회원, 비회원, 회원대우, 특별회원, 준회원, 경로회원 등)와 요일(주중, 주말)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요금(이하 ‘대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골프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뉴서울CC도 관련 기준을 두고 동일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는 「대우요금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내장객을

대상으로 입장요금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우요금은 다음 [표 4]와 같이 특별회원 대우, 회원대우 및 경로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 분류별 상세 자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문화진흥(주) 대우요금 시행세칙

분류	구분	내용
특별회원대우	당사 회원	운영위원(위원회 개최당일)
		現 클럽챔피언
	임직원	전임 임원
		20년 이상 근속직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현직 임원(위원장, 감사)
		전현직 사무처장
		20년 이상 근속직원
기타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회원대우	임직원	5년 이상 근속직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년 이상 근속직원
	기타	70세 이상 회원(주중, 주말 5천원 할인)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사 임직원에 대해 회원대우를 적용하는 타 골프장의 임직원
경로 비회원	기타	70세 이상 비회원(주중에 한함)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임직원 적용 제외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중 대우요금 적용을 담당하는 ▽▽▽▽팀을 대상으로 2018년도 1년간 대우요금 시행세칙에 따라 입장료를 우대하여 적용한 내역을 확인하였다. 정상요금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의 요금내역과, 정상요금과 대우요금 간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2018년도 대우요금 적용 내역

(단위 : 천원)

내용		적용요금	정상요금(*)	차액	
특별회원 대우	당사회원	운영위원(위원회 개최당일)	1,025	7,790	6,765
		現 클럽챔피언	3,340	25,080	21,740
	임직원	전임 임원	695	4,370	3,675
		20년 이상 근속직원	-	-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전현직 임원(위원장, 감사)	780	2,280	1,500
		전현직 사무처장	-	-	-
		20년 이상 근속직원	-	-	-
기타	<b>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b>	<b>675</b>	<b>3,610</b>	<b>2,935</b>	
회원대우	임직원	5년 이상 근속직원	1,350	4,560	3,210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10년 이상 근속직원	-	-	-
	기타	70세 이상 회원(주중, 주말 5천원 할인)	-	-	-
		<b>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b>	<b>10,920</b>	<b>31,920</b>	<b>21,000</b>
		당사 임직원에 대해 회원대우를 적용하는 타 골프장의 임직원	3,315	9,690	6,375
경로 비회원	기타	70세 이상 비회원(주중에 한함)	-	-	-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기타	알바트로스/챔피언 이벤트	585	1,710	1,125	
합 계		22,685	91,010	68,325	

(\*) 비회원 주중요금 기준으로 19만원 적용함

특히 다음 [표 6]과 같이 사장의 판단에 의한 대우요금 적용 비중이 전체 적용 내역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우요금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고 투명한 대우요금의 적용을 위하여 「대우요금 시행세칙」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표 6]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우요금 적용 내역

(단위 : 천원)

기간	건수	적용요금	비중	정상요금 기준
2018.1 ~ 2018.12	187	11,595	51%	35,530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대우요금 시행세칙」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부서주의

제 목	식자재 출고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농약, 비료, 식자재 등 재고자산에 대해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입출고 관리 및 매월 말 결산 시 실사를 통한 실물 관리를 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 「물품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물품 사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용통제를 취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2조에서는 물품 관리자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여 물품의 운용상황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식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식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월중 기록관리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월말에 식자재 재고 조사 결과 남아 있는 물량을 통

해 당기 사용분을 역산하여 출고 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고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중 입고 및 출고에 대한 기록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매 결산일에 실사를 통하여 재고 물량이 기록된 물량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식자재의 기중 사용분에 대한 기록 관리의 미흡 등 적절한 사용통제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식자재의 적절한 사용통제를 위하여 식자재 출고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부서주의, 개 선

제 목 공무국외여행 심사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선진 해외 골프장 및 관광지의 선진 서비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내부평가 우수자와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규정 제13조의3제2항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여 ‘심사 및 허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국외여행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서는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을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 또한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주)는 「여비규정」 제20조를 통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관 또는 단체(개인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에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중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 시행된 해외연수 내역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총 3건이 업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를 여행한 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2018~2019년도 한국문화진흥(주) 국외출장 현황

출장명	일정	방문목적 및 주요내용
2018년 경기 동부지역 경영자협의회 해외 골프장 벤치마킹	2018.1.16.~1.20.	○ 해외 명문 골프장의 관리기법 및 마케팅 방안 등 견학
2018년 임직원 해외연수	2018.1.15.~1.19. 2018.1.16.~1.20.	○ 해외 골프장 운영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 전문성 및 창의성 향상 ○ 해외 유명 관광지의 선진화된 서비스 시스템 체험 및 도입 기대

2019년 임직원 해외연수	2018.1.14.~1.18. 2018.1.16.~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명문 골프장의 선진 서비스 경험을 통한 골프장 서비스 품질 향상</li> <li>○ 내부평가 우수성과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견학 기회 제공</li> </ul>
----------------	--------------------------------------	-----------------------------------------------------------------------------------------------------------------------------------------

그런데 상기 3건의 해외연수 추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3건 모두 국외출장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 특히 ‘2018년 경기 동부지역 경영자협의회 해외 골프장 벤치마킹’의 국외출장 건은 총 경비 159만원 중 100만원의 출장경비를 경기 동부지역 경영자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쳤어야 했으나 해당 절차를 누락하였다.

한편 2018~2019년도 임직원 해외연수의 경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범주를 준하였을 때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주)는 임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문화진흥(주)의 규정에서는 타 기관에서 여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 ① 타 기관에서 여비를 지원 받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부서주의]**
- 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기관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뉴서울CC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팀이 주관하여 프로골프 선수를 클럽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의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2019. 12. 5) 뉴서울CC의 홍보대사로 2명의 프로골프 선수를 위촉하여 후원하고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한국문화진흥(주)의 홍보대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우선 홍보대사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이나 위촉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홍보대사 위촉과 후원과 관련된 공문에도 운영목적과 위촉기간, 후원기간, 후원내용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홍보대사 제도의 운영과 활용 방안, 홍보대사의 임무나 수행활동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홍보대사 대상 후원내용 또한 ‘코스 내 골프 연습장소 조건 없이 이용 가능’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수혜의 범위와 내역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과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 선발절차, 기준, 역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드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홍보대사 제도를 투명성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출장 및 외출 등 직원 복무관리 체계 미흡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정규 근무지 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 결재권자에게 출장명령을 받거나 소속 부서 장에게 외출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 「복무규정」 제35조에 직원이 회사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37조에 따라 출장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선지와 용무 등을 외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한국문화진흥(주) 직원은 회사업무로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장명령을 내

야하고, 외출 사유가 발생하여 외출을 하는 경우 행선지와 용무 등을 외출기록부에 작성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8. 1. 1.부터 2019년 10. 31.까지의 한국문화진흥(주) 출장 관련 복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시를 벗어나서 공무를 수행 건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별도의 출장명령을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출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정규 근무지 외부로 나가는 모든 경우 외출기록부에 행선지와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팀에 한하여 외출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타 부서의 경우 외출기록부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출장명령은 여비를 수령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여비를 충분히 지급하기 곤란하여 출장명령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출장명령이 반드시 출장여비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장명령은 직원이 정규 근무지 외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무처리의 일환이므로 여비의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외출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 한국문화진흥(주)에서는 외출에 대한 개념과 처리기준 등이 모호하여 출장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들도 외출기록부에 함께 작성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복무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직원이 출장 또는 외출 등으로 근무지 외부로 나가는 경우 직원들의 복무상황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등 복무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공용차량 운행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 1. 업무개요

한국문화진흥(주)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보유·임차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판단기준

한국문화진흥(주)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출기록부 작성 후 차량관리 담당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운행정보 등을 차량운행일지에 작성해야 한다. 또한 동 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8. 1. 1.부터 2019년 10. 31.까지의 한국문화진흥(주)가 보유 중인 공용차량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무나 행선지, 운행시간 등의 기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운행일지에 행선지와 용무, 운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역들이 있었으며, 기재된 행선지와 용무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과도하게 많은 내역들 또한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와 외출기록부를 대조하여 점검한 결과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명백함에도 외출기록부에는 해당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관실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차량번호 4572)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공용차량운행 관리에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공용차량 운행일지의 관리 미흡과 배차내역 누락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공용차량 관리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공용차량의 운행 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의 작성·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오납금 환급을 통한 예산 절감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모 범 내 용

한국문화진흥(주)은 뉴서울골프장을 포함하여 보유 또는 위탁 중인 건물과 토지 자산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업무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진흥(주) ★★★★★팀은 외부회계법인과의 세무용역 계약을 통하여 관리 중인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었던 재산세 내역을 검토하여 과세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기사대기실, 창고, 운동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표 8]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재산세가 과·오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동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근거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과·오납된 재산세 환급을 요청하여 총 119,006,640원을 환급받았다.

[표 8] 2014~2018년 지방세 과·오납 내역

연도	건축물			토지		합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재산세	교육세	
2014년	14,836,030원	397,120원	2,967,200원	120,160원	24,030원	18,344,540원
2015년	20,336,020원	565,040원	4,067,190원	125,120원	25,020원	25,118,390원
2016년	20,840,470원	582,780원	4,168,100원	124,080원	24,810원	25,740,240원
2017년	20,141,150원	564,450원	4,028,220원	123,370원	24,670원	24,881,860원
2018년	20,173,570원	567,080원	4,034,710원	121,870원	24,380원	24,921,610원
합계	96,327,240원	2,676,470원	19,265,420원	614,600원	122,910원	119,006,640원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또한 점검한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2개년 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와 이중으로 과세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표 9]와 같이 과·오납된 2014년~201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나주세무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추진하여 총 203,706,650원을 환급받았다.

[표 9] 2014~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내역

연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이자	합계
2014년	77,923,528원	15,584,706원	361,796원	93,870,030원
2015년	91,477,926원	18,295,586원	63,108원	109,836,620원
합계	169,401,454원	33,880,292원	424,904원	203,706,650원

위와 같이 과·오납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수는 총 322,713,290원으로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진흥(주) 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공유하시고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